

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, 국적취득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로서 부모·배우자의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추가하고자 함
- 기타 대법원규칙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, 국적취득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로서 부모·배우자의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추가하여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 부모·배우자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0조의2제2항제3호)
- 대법원규칙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82조의2)

#### 4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의2제2항제3호 중 “국적취득자”를 “국적취득자(국적취득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8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(이하 “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”라 한다)에 비치할 부책·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80조의2(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<u>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(원지음)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</u>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 | <p>제80조의2(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<u>국적취득자(국적취득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)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82조의2(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의 부채과 서류)</p> <p>① <u>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(이하 "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"라 한다)에 비치할 부채·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5. (생 략)</p>  | <p>제82조의2(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의 부채과 서류)</p> <p>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(이하 "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"라 한다)에 <u>비치할 부채·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  |

<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            | (02) 3480 - 1771 |